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6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22, 9, 26,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아동청년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'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' 관련 조문 삭제
- ⇒ 사유: '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"를 "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"로 변경
- 2) 상위법령 반복내용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

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2. 9. 5.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-92호로 제출되어, 2022. 9.13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- 개정 취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, 중복,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한 법령명과 근거 조항의 표기 등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에서 "목적"을 "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로
 - 제2조 정의는 삭제 하였으며
 - 제3조제1항 중 "비영리법인 또는"을 "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조제 8호에 따른"으로
 - 제4조 제1호 "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、복지지원"을 "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"으로, 제2호~제6호는 삭제
 - 제5조, 제6조 삭제
 - 제7조 제1호, 제2호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을 "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、점검하여야 한다."로 명확히 하였으며
 -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를 삭제 하였고
 - 제15조 "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"로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따라서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근거 조항 표기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 개정조례안은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 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、반영하고 있어,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[관련법규]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[제목개정 2021. 3. 23.]

-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 3. 23.>
 -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 -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, 3, 23.>
-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 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 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, 12, 18.>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

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(이하 "청소년상담복지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. 3. 19.>

- 1.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· 복지지원
- 2. 상담 ·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3. 상담 자원봉사자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- 4.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- 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위
- 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(自活) 및 재활(再活) 지원
- 7.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, 관리업무,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,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,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.
- ③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, 관리업무,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.
-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,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2. 4. 19.>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22-92관련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: 장정희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5조의 제목 "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"을 "운영 지원"으로 하고,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안 제15조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"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"을 "운영 지원"으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15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위탁 및 운영비의	<삭 제>	<u>제5조(운영 지원) 구</u>
지원) ① 제3조 제2항의		<u>청장은 센터 운영</u>
규정에 따라 위탁하고		에 필요한 경비 및
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		사업비 등을 예산
포구 행정사무의 민간		의 범위에서 지원
위탁에 관한 조례」를		<u>할 수 있다.</u>
<u> 준용한다.</u>		
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		
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		
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		
서 지원할 수 있다.		
③ 제1항의 경우에 예산		
•회계에 관하여 필요		
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		
인 재무·회계 규칙 <u>」</u>		
을 준용한다.		
<u> <신 설></u>	제15조(운영 지원) 구청	<삭 제>
	<u>장은 센터 운영에 필</u>	
	요한 경비 및 사업비	
	등을 예산의 범위에서	
	지원할 수 있다.	